

예산총칙

제1조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875,171,986	26,255,158
일반회계	762,911,801	22,887,354
특별회계	112,260,185	3,367,804
기타특별회계	31,180,420	935,413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0	60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2,861,192	85,83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98,000	5,94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256,620	277,699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103,826	93,115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4,885,771	146,573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1,368,611	41,058
수질개선 특별회계	6,788,900	203,667
기반시설 특별회계	2,715,500	81,465
공기업 특별회계	81,079,765	2,432,39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5,039,584	1,651,187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06,250	33,18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933,931	748,017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000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9,644,691천원으로 한다.